

증평군 명예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1. 9. 16 예규 제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평군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증평군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명예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관행에 대한 제보
2. 공무원의 부조리·불친절행위 제보
3. 공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평·불만사항 제보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감사 참여
5. 기타 군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건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서 제외한다.

1. 군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제3조(구성) ① 명예감사관은 2명 이상 5명 이하의 명예직으로 한다.

② 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평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인사
2. 지방행정 및 주민불편·애로사항을 잘 아는 퇴직공무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또는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평소 생활민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명감이 투철한 자
5.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분야의 자격이 있는 자

제4조(임기) ①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명예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①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 따른 명예감사관의 기능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③ 명예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 본인이 명예감사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명예감사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군정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7조(수당)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